

『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2월 4일

나. 발 의 자 : 한성희, 김상조, 김인배, 김재상, 김정곤, 박교상
안장환, 윤영철, 윤종호, 임춘구, 정근수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2월 12일

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한 성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현재 운용중인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7조의 “금융기관 부담”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금융기관에게 융자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,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, 정비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 정비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- 예산관련 : 해당없음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안 경 우

☐ 본 『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7조(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)의 조문 중,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기존의 구미시,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“금융기관 부담”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,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